에스에프씨 주식회사 수요예측 참가 안내

※ 에스에프씨㈜ 수요예측 참여기관 주의사항

■ 금번 수요예측은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의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접수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만, 미래에셋증권㈜의 홈페이지 문제로 인해 인터넷 접수가 불가능할 경우만 보완적으로 서면, 유선, Fax, E-mail 등의 방법에 의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는 국내 및 해외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할 예정이며, 공동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는 해외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국내 기관투자자는 미래에셋증권㈜를 통해 수요예측에 참여하여야 하며, 해외 기관투자자는 수요예측 참여 시 미래에셋증권㈜ 또는 한국투자증권㈜를 통해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해외 기관투자자는 수요예측 참여 시 미래에셋증권㈜ 및 한국투자증권㈜ 중 한 곳에만 참여하여야 합니다.

■ 증권신고서 및 수요예측 참여안내 등을 반드시 읽어 보시고 숙지하신 후 수요예측에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 서면으로 수요예측 접수 시, 접수서류의 누락이 발생할 소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요예측 접수서류 누락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수요예측 접수 서류를 당사에 송부하신 기관투자자 담당자께서는 수고스러우시더라도 당사 수요예측 접수 담당자(연락처 아래 참고)에 유선상으로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 드립니다.

■ 투자일임회사(일임), 집합투자회사(펀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의 경우 본 참가신청서 및 첨부서류 뿐만 아니라 별도의 확약서 및 펀드별 총괄집계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하오니, 당사 홈페이지에 업로드 된 첨부파일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신탁회사의 경우 첨부서류에 있는 고유재산 관련 확약서를 제출해야 하오니, 당사 홈페이지에 업로드 된 첨부파일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모든 기관투자자께서는 반드시 첨부된 '(필독) 미래에셋증권 IPO 수요예측 참여 안내' 자료를 참고하여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모든 기관투자자께서는 '주금납입능력에 관한 확약서'를 당사 수요예측 홈페이지 상에 업로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요예측 참여 완료 후, 수정하시는 경우 최종 수요예측 참여일은 수정 완료일로 인정되오니, 최초 수요예측 참여 시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의 수요예측 참여자는 참여기관 구분을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또는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으로 선택하여 수요예측에 참가할 수 있으며 다만 15 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경우에만 “증권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 9 조(주식의 배정)에 따른 우선배정 대상에 해당됩니다. 또한 선택하신 참여기관 구분에 해당하는 총괄집계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펀드에 투자하는 위탁재산의 주금납입능력은 위탁재산 자산총액에서 피투자펀드 자산총액 보유분에서 차감하여야 하며, 펀드 순자산금액 또한, 동일하게 피투자펀드 순자산총액 보유분을 차감하여야 합니다. 다만, 집합투자 규약 또는 투자설명서 등으로 피투자펀드의 IPO 미참여를 소명 시 차감을 예외로 합니다. 소명서류는 수요예측 첨부서류 업로드를 통해 제출하며, 주관사가 소명근거를 확인하기 쉽도록, 서류상에 소명 근거를 알기 쉽게 정리하거나 소명 근거가 있는 페이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는 각각 투자일임재산,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 또는 집합투자재산으로 수요예측 참여 시 등록기간·운용규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배정받은 주식에 대해 의무보유를 확약하고(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으로 참여 시 15 일 이상, 그 외 일반 위탁재산으로 참여 시 3 개월 이상) 관련 확약서를 인터넷 수요예측 참여 시 당사 홈페이지 상에 업로드할 경우에만 수요예측에 참여가 가능합니다. (의무보유를 확약하더라도 고유재산으로는 수요예측 참여 불가)

■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투자일임회사 및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의 수요예측 참여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등록업 승인 증빙 서류를 인터넷 수요예측 참여 시 당사 홈페이지 상에 업로드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금번 수요예측 참여자 중 확정공모가액 이상의 가격을 제시한 기관투자자 및 가격 미제시자를 대상으로 물량을 배정할 예정입니다. 단, 수요예측 참여 시 확정공모가액 기준 아래 10% 이내 가격을 제시하며 확정공모가액 배정희망여부 란에 “예”를 선택한 경우 확정공모가액으로 배정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배정한다는 의미가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선상으로 확인되지 않은 누락된 수요예측 접수서류에 대해서는 당사에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국내기관 수요예측 담당자]

부 서	담당자	연락처
미래에셋증권 IPO 본부 IPO2 팀	심종현 차장	02) 3774-7147
	김지상 차장	02) 3774-7071
	이윤후 과장	02) 3774-7160

[해외기관 수요예측 담당자]

부 서	담당자	연락처
One-Asia Equity Sales 팀	One-Asia Equity Sales 팀	orders@miraeasset.com

에스에프씨㈜ 수요예측 참가 안내

미래에셋증권㈜를 대표주관회사로 2026 년 11 월 18 일(수) ~ 2026 년 11 월 19 일(목) 유가증권시장 공모 청약 예정인 에스에프씨㈜의 기명식 보통주식 5,000,000 주의 공모가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수요상황(가격 및 수량)을 파악하고자 아래와 같이 수요예측을 실시하오니 기관투자자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1. 접수일시 및 장소

1) 접수기간 : 2026 년 11 월 09 일(월) ~ 2026 년 11 월 13 일(금), 09 시~17 시
2) 접수방법
   - **국내기관 :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접수 우선, 인터넷 접수 불가 시 서면접수**
   - **해외기관 :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접수 우선, 인터넷 접수 불가 시 서면접수**
3) 접수장소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5 길 26(미래에셋센터원빌딩) 동관 35 층 IPO2 팀
4) 문의전화 : 02) 3774 – 7147, 7071, 7160 (국내기관)

※ 수요예측 마감시간 (2026 년 11 월 13 일(금) 17 시, 홈페이지를 통한 참여의 경우에는 접수완료 기준, 서면접수(우편접수 포함)의 경우에는 미래에셋증권㈜ 도착 기준)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수요예측 마감 시간 이후의 접수분은 무효 처리되며, 우편접수로 인한 문제 발생(도착의 지연, 누락 등)의 책임은 제출자에게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근거 규정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 5 조

3. 방법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수요예측 방식

4. 수요예측 참가자격

▣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금융투자업규정」제 4-19 조제 8 호 및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 5 조의 3 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주관회사는 청약자의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해야 하며, 대표주관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 5 조의 3 제 1 항 제 1 호 및 제 2 호의 방법을 활용하여 기관투자자의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합니다.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기관투자자는 수요예측등 참여 금액이 주금납입능력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점을 고려할 시, 주금납입능력을 초과하는 수요예측 참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주금납입능력에 대한 확인대상 및 확인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표준방법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 5 조의 3 제 1 항 제 1 호)]

구분	내용
확인대상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기관투자자의 재산에 따라 ① 고유재산은 자기자본, ② 위탁재산은 참여 건(계좌)별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개별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을 주금납입능력으로 확인합니다. ① 고유재산 : 자기자본을 기준으로 하며, 직전 분기말(해당 자료가 없는 경우, 그 전 분기말) 개별재무제표상의 금액입니다. ② 위탁재산 : 수요예측 참여 건(계좌)별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개별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입니다.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수요예측 참여일전 3 개월간(위탁재산의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3 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의 일평균 평가액으로 합니다. ③ 단,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상기 제 2 항에 따라 산정한 자산총액에서 수요예측등 참여일 전일에 보유한 집합투자증권의 자산총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다만, 기관투자자가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집합투자기구는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지 않음을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 등으로 대표주관회사에 소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확인방법	기관투자자는 '확인대상' 자기자본 또는 자산총액 합계액을 주금납입능력으로 확약서(*)에 기재하여 대표이사 또는 준법감시인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받은 후 주관회사에 제출하고, 주관회사는 동 확약서 상의 자기자본 또는 자산총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기관투자자의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합니다.

* 기관투자자가 수요예측 참여 화면(인터넷 홈페이지)에 주금납입능력('확인대상' 자기자본 또는 자산총액 합계액)을 입력하면 확약서 상에 주금납입능력이 기재되고(주금납입능력을 초과한 참여금액으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없도록 전산통제), 기관투자자는 동 확약서를 인쇄하여 대표이사 또는 준법감시인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 제출하도록 합니다.

다만,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는 준법감시인의 사전 승인을 받아 제정한 내부지침에 근거하여 미래에셋증권㈜의 One-AsiaEquitySales 본부를 통해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외국인 기관투자자의 경우, 다음의 방법으로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체방법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 5 조의 3 제 1 항 제 2 호)]

구분	내용
확인대상	미래에셋증권㈜의 One-AsiaEquitySales 본부를 통해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외국인 기관투자자의 경우 ① Qualified Institutional Buyer(QIB)에 해당하거나 ② 해외 국부펀드에 해당하는 경우 주금납입능력을 USD100,000,000 으로 간주합니다. ③ QIB 및 해외 국부펀드에 해당하지 않거나 QIB 및 해외 국부펀드에 해당하더라도 USD100,000,000 이상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 고유재산은 자기자본, 위탁재산은 총 운용자산(Asset Under Managemet)을 주금납입능력으로 확인합니다.
확인방법	① 미국 증권거래법 144A 에 따른 Qualified Institutional Buyer(이하 "QIB"라 한다)의 지위에 있는 외국인 기관투자자의 경우 주금납입능력은 USD 100,000,000 으로 간주하고, One-AsiaEquitySales 본부는 외국인 기관투자자 본인이 QIB 임을 확인한 대체확약서(*)를 수령하여 확인합니다. 대체확약서는 제출일이 속한 분기말까지 유효한 효력을 가집니다. ② 해외 국부펀드(**)로부터 수요예측 참여의사를 받은 경우, 제 1 호의 QIB 에 준하여 주금납입능력을 USD 100,000,000 으로 간주합니다. ③ 제 1 항 및 제 2 항에 해당하지 않는 외국인 기관투자자이거나 제 1 항 및 제 2 항에 해당하는 기관투자자 중 USD 100,000,000 이상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외국인 기관투자자의 경우, 고유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직전 분기말(자료가 없다면 그 전 분기말 기준) 자기자본을, 위탁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직전 분기말(자료가 없다면 그 전 분기말 기준) 또는 직전 분기(자료가 없다면 그 전 분기) 3 개월간 일평균 총 운용자산(Asset Under Management)을 주금납입능력으로 간주하고, One-AsiaEquitySales 본부는 대체확약서(*)를 수령하여 확인합니다. 대체확약서는 제출일이 속한 분기말까지 유효한 효력을 가집니다.

* "대체확약서"란 외국인 기관투자자 본인이 QIB 의 지위 여부, 고유재산의 경우 자기자본, 위탁재산의 경우 총 운용자산(Asset Under Management) 등을 기재하여 본인의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하고, 적법한 서명권한을 가진 의사결정자가 서명한 후 제출한 서류입니다.

** "국부펀드"란 국가의 자산을 정부가 직접 운용하여 증식시키기 위해 설립한 특수 목적 기관입니다.

▣ 기관투자자는『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 2 조 제 8 호에 의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10 조 제 2 항 제 1 호부터 제 10 호(제 8 호의 경우 법 제 8 조제 2 항부터 제 4 항까지의 금융투자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 제 13 호부터 제 17 호까지, 제 3 항제 3 호, 제 10 호부터 제 13 호까지의 전문투자자

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 182 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되거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 249 조의 6 또는 제 249 조의 10 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된 집합투자기구

다.「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연금공단

라.「우정사업본부 직제」에 따른 우정사업본부

마.「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 8 조 제 6 항의 금융투자업자(이하 "투자일임회사"라 한다)

바. 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법인으로 외국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자

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 8 조 제 7 항의 금융투자업자 중 아목이외의 자(이하 "신탁회사"라 한다)

아.「금융투자업규정」제 3-4 조제 1 항의 부동산신탁업자(이하 "부동산신탁회사"라 한다)

*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 5 조 제 1 항 제 2 호 단서조항의 "창업투자회사등"의 수요예측 참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 집합투자회사등의 경우「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 9 조의 2(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주식의 배정)에 의거, 수요예측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A. 집합투자회사등이 위탁재산으로 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주식의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각각「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87 조 제 1 항 제 2 호의 4, 제 99 조 제 2 항 제 2 호의 4, 제 109 조 제 1 항 제 2 호의 4 에 해당함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확약서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B.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가 제 1 항에 따라 집합투자회사등에게 공모주식을 배정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a.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집합투자회사등은 위탁재산의 경우 매입 희망가격을 제출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b. 수요예측등에 참여한 기관투자자가 공모가격 이상으로 제출한 전체 매입 희망수량이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수요예측 대상주식수를 초과할 것

c. 동일한 인수회사를 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으로 하는 집합투자업자등에게 배정하는 공모주식의 합계를 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하는 전체 수량의 1% 이내로 할 것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이란「조세특례제한법」제 91 조의 15 제 1 항에 따른 투자신탁 등을 말하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으로서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① 「조세특례제한법」 제 91 조의 15 제 1 항에 따른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이하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이라 한다). 다만, 해당 투자신탁 등의 최초 설정일・설립일이 속하는 분기 또는 그 다음 분기 말일 전 영업일까지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 93 조제 1 항제 1 호 및 같은 조 제 5 항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의 고위험고수익채권의 보유비율이 같은 법 시행령 제 93 조제 1 항제 1 호 각 목의 비율 이상이어야 합니다.

② 법률 제 19328 호 조세특례제한법의 시행일 이전의 제 91 조의 15 제 1 항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이하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이라 한다)으로서 최초 설정일・설립일이 2023 년 12 월 31 일 이전일 것. 다만, 해당 투자신탁 등의 최초 설정일・설립일로부터 수요예측 참여일까지의 기간이 6 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대통령령 제 33499 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일 이전의 제 93 조제 3 항제 1 호 및 같은 조 제 7 항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의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한 보유비율이 100 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국내 채권의 보유비율이 100 분의 60 이상이어야 합니다.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
『조세특례제한법』제 91 조의 15(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
①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하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이라 한다)에 2024 년 12 월 31 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서 받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은「소득세법」제 14 조제 2 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 93 조(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 91 조의 15 제 1 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이하 이 조에서 "투자신탁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출 것

가. 공모집합투자기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9 조제 18 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중 같은 조 제 19 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투자신탁등의 경우: 신용등급(「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335 조의 3 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자 2 이상이 평가한 신용등급 중 낮은 신용등급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BBB+ 이하[「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 2 조제 1 호나목에 따른 사채 중 같은 법 제 59 조에 따른 단기사채등에 해당하는 사채(이하 이 조에서 "단기사채"라 한다)의 경우에는 A3+ 이하]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 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 분의 60 이상일 것

나. 공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등의 경우: 신용등급이 A+, A 또는 A-(단기사채의 경우에는 A2+, A2 또는 A2-)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 분의 15 이상이고, 신용등급이 BBB+ 이하(단기사채의 경우에는 A3+ 이하)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 분의 45 이상일 것

2. 국내 자산에만 투자할 것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조세특례제한법』제 91 조의 15(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하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이라 한다)에 2017 년 12 월 31 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1 명당 투자금액 3 천만원(모든 금융회사에 투자한 투자신탁 등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인 투자신탁 등에서 받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 14 조제 2 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 93 조(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 91 조의 15 제 1 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335 조의 3 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신용평가업자"라 한다) 2 명 이상이 평가한 신용등급 중 낮은 신용등급이 BBB+ 이하[「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제 59 조에 따른 단기사채등(같은 법 제 2 조제 1 호나목에 따른 권리에 한정한다.)의 경우 A3+ 이하]인 사채권(이하 이 조에서 "비우량채권"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 91 조의 15 제 1 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1 조제 2 항에 따른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주권(이하 이 조에서 "코넥스 상장주식"이라 한다)을 말한다.

③ 법 제 91 조의 15 제 1 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이하 이 조에서 "투자신탁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 해당 투자신탁등의 설정일・설립일부터 매 3 개월마다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한 평균보유비율이 100 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국내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 분의 60 이상일 것. 이 경우 "평균보유비율"은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 국내채권 각각의 평가액이 투자신탁등의

평가액에서 차지하는 매일의 비율(이하 이 조에서 "일일보유비율"이라 한다)을 3 개월 동안 합산하여 같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비율로한다.

2. 국내 자산에만 투자할 것

(중략)

⑦ 제 3 항제 1 호를 적용할 경우 해당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의 만기일 전 3 개월 및 설정일・설립일 후 3 개월은 같은 호 전단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으로 참여하는 투자신탁등에 대하여『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 2 조 제 18 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임을 확약하는 "확약서" 및 신탁자산 구성내역 등을 기재한 "수요예측참여 총괄집계표"를 징구할 수 있으며, 이를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 5 조의 2 제 1 항에 따라 투자일임회사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투자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투자일임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 2 조 제 18 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의 경우에는 제 1 호 및 제 4 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 2 조 제 8 호에 따른 기관투자자일 것. 단, 같은 호 마목에 따른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수요예측등 참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를 제외한다.

2.『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 9 조 제 4 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3.『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 17 조의 2 제 6 항 제 1 호에 따라 불성실 수요예측참여자로 지정되어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참여 및 공모주식 배정이 금지된 자가 아닐 것

4. 투자일임계약 체결일로부터 3 개월이 경과하고, 수요예측 참여일전 3 개월간의 일평균 투자일임재산의 평가액이 5 억원이상일 것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 5 조의 2 제 2 항에 따라 투자일임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투자일임회사의 고유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1. 투자일임업 등록일로부터 2 년 이 경과하고, 투자일임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투자일임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 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이 50 억원 이상일 것

2. 투자일임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투자일임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 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투자일임업 등록일로부터 3 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투자일임업 등록일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 투자일임재산의 일평균 평가액을 말한다)이 300 억원 이상일 것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 5 조의 2 제 3 항에 따라 투자일임회사는 투자일임재산 또는 고유재산으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경우 각각 같은 조 제 1 항 또는 제 2 항의 조건이 모두 충족됨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투자일임재산으로 참여하는 투자일임회사에 대하여『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 5 조의 2 제 1 항에 따른 투자일임회사임을 확약하는 "확약서" 및 "펀드명, 펀드설정금액, 펀드별 참여현황" 등을 기재한

"수요예측참여 총괄집계표"를 징구할 수 있으며, 이를 요청 받은 투자일임회사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 5 조의 2 제 4 항에 따라 부동산신탁회사는 고유재산으로만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수요예측 참여 제외대상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마"항에 해당하는 자가 배정받은 주식에 대해 6 개월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거나 "마"항의 창업투자회사 등이 일반청약자의 자격으로 청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가. 인수회사(대표주관회사 포함)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 2 조제 9 호의 규정에 따른 이해관계인을 말함). 다만, 제 9 조의 2 제 1 항에 따라 위탁재산으로 청약하는 집합투자회사,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이하 "집합투자회사등"이라 한다)는 인수회사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으로 보지 아니한다.)

나.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 2 조제 9 호의 규정에 따른 이해관계인을 말하며, 동 규정 제 2 조제 9 호의 가목 및 라목의 임원을 제외함)

다.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발행회사 또는 인수회사(대표주관회사 포함)에 용역을 제공하는 등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

라. 주금납입능력을 초과하는 물량 또는 현저히 높거나 낮은 가격을 제시하는 등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제시한 매입희망 물량과 가격의 진실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자

마. 대표주관회사가 대표주관업무를 수행한 발행회사(해당 발행회사가 발행한 주권의 신규 상장일이 이번 기업공개를 위한 공모주식의 배정일부터 과거 1 년 이내인 회사를 말한다)의 기업공개를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된 증권신고서의 "주주에 관한 사항"에 주주로 기재된 주요주주에 해당하는 기관투자자 및 창업투자회사 등

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 17 조의 2 제 4 항에 의거 금번 공모 이전에 실시한 공모에서 수요예측일 현재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에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로 분류되어 제재기간 중에 있는 기관투자자

사. 동 규정 제 5 조제 1 항제 2 호에서 정의하는 창업투자회사등 (금번 공모 시에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 10 조의 3 제 1 항에 따른 환매청구권을 부여하지 않음)

아. 그 밖에 인수질서를 문란하게 한 행위로서 가목부터 아목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

▣ 불성실수요예측참여자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 17 조의 2 제 1 항 및 2 항에 따라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한 후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 17 조의 2 제 4 항에 의거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로 지정되는 경우 해당 불성실 수요예측 발생일로부터 일정 기간 동안 수요예측의 참여 및 공모주식 배정이 제한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① 기업공개 또는 무보증사채 공모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불성실 수요예측 등 참여행위로 본다.

1.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주식 또는 무보증사채를 배정받은 후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청약 후 주금 또는

무보증사채의 납입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2. 기업공개시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하고 주식을 배정받은 후 의무보유기간 내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이 경우 의무보유기간 확약의 준수여부는 해당기간 중 일별 잔고를 기준으로 확인하며, 의무보유 확약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대표주관회사의 자료 제출 요구에 허위자료를 제출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는 경우에는 의무보유기간 확약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미래에셋증권
가. 해당 주식(의무보유를 확약하고 배정받은 주식에 대해 무상증자, 주식배당 등으로 취득한 주식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을 매도 등 처분하는 행위
나. 해당 주식을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 또는 대용증권으로 지정하는 행위
다. 해당 주식의 종목에 대하여 법 제 180 조제 1 항제 2 호에 따른 공매도를 하는 행위. 이 경우 일별 잔고는 공매도 수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이하 이 항 및 <별표 1>에서 같다)
라. 그 밖에 경제적 실질이 가목부터 다목에 준하는 일체의 행위
3. 수요예측에 참여하면서 관련 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제출하는 경우
4.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배정받은 주식을 투자자에게 매도함으로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 11 조를 위반한 경우
5.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 부동산신탁회사 및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가 제 5 조의 2 제 1 항부터 제 11 항까지를 위반하여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한 경우
6.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신탁계약이 설정일로부터 1 년 이내에 해지되거나,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날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신탁계약이 해지(신탁계약기간이 3 년 이상인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종료일 전 3 개월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되는 경우
7. 사모의 방법으로 설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이 수요예측등에 참여하여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후 최초 설정일로부터 1 년 6 개월 이내에 환매되는 경우
8.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의 설정일·설립일로부터 1 년 이내에 해지되거나,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날로부터 3 개월 이내에 해지(계약기간이 1 년 이상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의 만기일 전 3 개월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되는 경우
9. 기업공개시 수요예측등참여금액이 제 5 조의 3 제 1 항에 따른 주금납입능력을 초과하는 경우
10.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한 집합투자회사등이 인수회사의 관계인수인 해당 여부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거나 제 9 조의 2 제 1 항을 위반하여 확약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11. 그 밖에 인수질서를 문란하게 한 행위로서 제 1 호부터 제 10 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
② 제 15 조의 2 에 따라 투자자 재산 운용업무가 이관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제 1 항제 2 호에서 정하는 불성실 수요예측 등 참여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의무보유기간 준수를 위하여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을 증명한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이관회사가 제 15 조의 2 제 2 항을 위반하고 의무보유기간 내에 제 1 항제 2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그 이관회사
2. 이관회사가 제 15 조의 2 제 2 항에 따라 의무보유기간 관련 정보를 충실히 전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관회사가 제 15 조의 2 제 3 항을 위반하여 의무보유기간 내에 제 1 항제 2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그 수관회사

▣ 불성실수요예측참여자에 해당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의 '불성실수요예측참여자' 관리대장에 기록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또한,「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 17 조의 2 제 2 항에 의거하여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는 '불성실수요예측참여자'의 명단을 금융투자협회에 미래에셋증권 통보하며, 협회는 대표주관회사로부터 통보 받은 불성실수요예측참여자의 명단을 협회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금융투자협회는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행위를 한 자(법 제 249 조의 10 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된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법 제 249 조의 14 에 따른 업무집행사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협회 정관 제 41 조에 따라 설치된 자율규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로 지정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로 지정된 자에 대하여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 지정기준"에 따라 수요예측등 참여를 제한하여야 합니다. 다만,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행위의 원인이 단순 착오나 오류에 기인하거나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로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 지정기준"에 따른 수요예측등 참여제한 기간이 3 개월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협회 정관 제 45 조제 1 항제 4 호의 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원회가 제재금 또는 금전의 납부를 부과하는 경우, 위원회는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로 지정된 자의 고유재산에 한하여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 지정기준"에 따라 수요예측등 참여제한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 제재사항】

불성실수요예측등 참여 행위의 동기 및 그 결과를 고려하여 일정기간 수요예측 등 참여 제재(미청약, 미납입과 의무보유 확약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기준을 분리, 적용)

적용 대상	위반금액		수요예측 참여제한기간
	정의	규모	
미청약・미납입	미청약・미납입 주식수 X 공모가격	1 억원 초과	6 개월 + 1 억원을 초과하는 위반금액 5 천만원 당 1 개월씩 가산 (참여제한기간 상한 : 24 개월)
		1 억원이하	6 개월
의무보유 확약위반	의무보유 확약위반 주식수 주 1) X 공모가격	1 억원 초과	6 개월 + 1 억원을 초과하는 위반금액 1.5 억원 당 1 개월씩 가산 (참여제한기간 상한 : 12 개월)
		1 억원 이하	6 개월
수요예측등 참여금액의 주금납입능력 초과	(배정받은 주식수 X 공모가격)	1 억원 초과	6 개월 + 1 억원을 초과하는 위반금액 1.5 억원 당 1 개월씩 가산 (참여제한 기간 상한 : 12 개월)
		1 억원 이하	6 개월
수요예측등 정보 허위 작성・제출	배정받은 주식수 X 공모가격		미청약・미납입과 동일 (참여제한기간 상한 : 12 개월)

적용 대상	위반금액		수요예측 참여제한기간
	정의	규모	
법 제 11 조 위반 대리청약	대리청약 처분이익		미청약・미납입과 동일 (참여제한기간 상한 : 12 개월)
투자일임회사등 수요예측등 참여조건 위반	**신청한** 주식수 X 공모가격		미청약,미납입과 동일 (참여제한기간 상한 : 24 개월)
벤처기업투자신탁 해지금지 위반			12 개월 이내 금지
사모 벤처기업투자신탁환매금지 위반			12 개월 X 환매비율 주 2)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해지금지 위반			12 개월 이내 금지
기타 인수질서 문란행위			6 개월 이내 금지
비고: 동일 종목에 적용 대상이 두 건 이상인 경우, 수요예측등 참여제한 기간이 가장 긴 건을 적용 감면이 있는 경우, 참여제한기간 상한을 적용하지 않은 기간에 감면을 적용			

주 1) 의무보유 확약위반 주식수: 의무보유 확약위반이 발생한 수요예측등 참여계좌(위탁재산의 경우 위원회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달리 정할 수 있음)의 의무보유확약 주식수와 의무보유확약 기간 중 보유주식수가 가장 적은 때의 주식수와의 차이

주 2) 사모 벤처기업투자신탁 환매비율: 환매금액 누계/(설정액 누계 - 환매외 출금액 누계)

주 3) 업력·규모 요건: 일반 사모운용사, 투자일임회사 등록 후 2 년 경과 및 위탁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 전 3 개월간 일평균 평가액 50 억원 이상, 또는 위탁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 전 3 개월간 일평균 평가액 300 억원 이상. 일반 사모운용사, 투자일임회사를 일임재산의 투자자에서 제외

주 4) 가중:

1) 해당 사유발생일 직전 2 년 이내에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로 지정된 사실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100 분의 200 범위 내 가중할 수 있으며,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 지정횟수(종목수 기준이며, 해당 지정심의건을 포함)가 2 회인 경우 100 분의 50, 3 회 및 4 회인 경우 100 분의 100, 5 회 이상인 경우 100 분의 200 을 가중할 수 있음.

2) 상장일에 제 17 조의 2 제 1 항제 2 호의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100 분의 50(1 개월 미만이면 1 개월)을 가중할 수 있음

3) 수요예측등 참여제한 기간은 미청약·미납입 및 수요예측등 참여금액의 주금납입능력 초과의 경우 36 개월, 기타의 경우 24 개월을 초과할 수 없음

주 5) 감면:

1) 해당 사유 발생일 직전 1 년 이내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 지정 여부, 고의·중과실 여부, 사후 수습 노력의 정도, 위반금액 및 비중을 고려하여 그 결과가 경미한 경우 감경할 수 있으며,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행위의 원인이 단순 착오나 오류에 기인하거나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면제(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로 지정하되 수요예측등 참여를 제한하지 않는 것. 이하 같음) **하거나 수요예측등 참여제한 기간("3. 제재 규모 산정 방법"에 따라 산정)이 3 개월 이하인 경우에 한해 제재금 또는 금전을 부과할 수 있음**

1 의 2) 수요예측등 참여금액의 주금납입능력 초과의 경우 해당 사유 발생일 직전 1 년 이내 사유 발생횟수(종목수 기준이며, 해당 지정심의건을 포함)가 1 회인 경우 제재를 면제 할 수 있음. 다만, 사유의 발생 원인이 고의 또는 중과실에 기인하거나 허위자료 제출 등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재를 면제하지 아니함

2) 의무보유 확약위반 후 사후 수습을 위하여 확약기간 내 해당 주식을 재매수하거나 위반비중이 경미하여 확약준수율*이 **80% 이상인 경우로서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확약준수율 이내에서 경제적 이익을 감안하여 수요예측등 참여제한 기간을 감면하거나 수요예측등 참여제한 기간("제재 규모 산정 방법"에 따라 산정)이 3 개월 이하인 경우에 한해 제재금 또는 금전을 부과할 수 있음**

주) 확약준수율: [해당 주식의 확약기간 내 일별 잔고 누계액 / (배정받은 주식수 × 확약기간 일수)] × 100(%). 단, 일별 잔고는 확약한 수량 이내로 함

주 6) 제재 규모 산정 방법:

1) 수요예측등 참여제한 기간(경제적 이익이 없는 경우)

① 가중과 감면이 모두 없는 경우: '수요예측등 참여제한 기간'의 수요예측등 참여제한기간

② 가중만 있는 경우: '수요예측등 참여제한 기간'의 수요예측등 참여제한기간을 '가중', '기타사항(기업공개 및 무보증사채 공통적용)'에 따라 가중

③ 감면만 있는 경우: '수요예측등 참여제한 기간'의 수요예측등 참여제한기간을 '감면', '기타사항(기업공개 및 무보증사채 공통적용)'에 따라 감면하되, 의무보유 확약준수율에 따라 감면하는 기간은 감면 전 참여제한 기간에 확약준수율을 곱한 만큼으로 함

④ 가중과 감면이 모두 있는 경우: '수요예측등 참여제한 기간'의 수요예측등 참여제한기간을 ②,③에 따라 가중・감면

2) 수요예측등 참여제한 기간(경제적 이익이 있는 경우)

① 가중과 감면이 모두 없는 경우: 1)①의 수요예측등 참여제한 기간

② 가중만 있는 경우: 1)②의 수요예측등 참여제한 기간

③ 감면만 있는 경우: 1)①의 수요예측등 참여제한 기간을 1)③의 방식으로 감면하되, 경제적 이익을 500 만원으로 나눈 몫 만큼을 감면에서 제외

④ 가중과 감면이 모두 있는 경우: 1)①의 수요예측등 참여제한 기간을 1)④의 방식으로 가중·감면하되, 경제적 이익을 500 만원으로 나눈 몫 만큼을 감면에서 제외

3) 제재금 또는 금전[1) 또는 2)에 따른 수요예측등 참여제한 기간이 3 개월 이하인 경우에 부과

- Max [1),2)의 수요예측등 참여제한 기간(개월수) × 500 만원, 경제적 이익*]
 * 100 만원 미만의 경제적 이익은 절사

- 해당 사유 발생일 직전 1 년 이내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 지정 여부, 고의·중과실 여부, 사후 수습 노력의 정도, 위반금액 및 비중을 고려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감경할 수 있음

4) 불성실 수요예측등 적용 대상별 경제적 이익

- 경제적 이익 산정표준을 기준으로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손익을 조정할 수 있으며,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달리 정할 수 있음

적용 대상	경제적 이익 산정표준
미청약・미납입	- 의무보유 확약을 한 경우 : 배정 수량의 공모가격 대비 확약종료일 종가(**) 기준 평가손익 × (-1) - 의무보유 확약을 하지 아니한 경우 : 배정 수량의 공모가격 대비 상장일 종가기준 평가손익 × (-1)
의무보유 확약위반	배정받은 주식 중 처분한 주식의 처분손익 + 미처분 보유 주식의 공모가격 대비 확약종료일 종가 기준 평가손익(*) - 배정받은 주식의 공모가격 대비 확약종료일 종가(**) 기준 평가손익
수요예측등 정보 허위 작성・제출	- 의무보유 확약을 한 경우 : 배정받은 주식의 공모가격 대비 확약종료일 종가(**) 기준 평가손익 - 의무보유 확약을 하지 아니한 경우 : 배정받은 주식의 공모가격 대비 상장일 종가기준 평가손익
법 제 11 조 위반 대리청약	대리청약 처분이익
투자일임회사등 수요예측등 참여조건 위반	- 의무보유 확약을 한 경우 : 배정받은 주식의 공모가격 대비 확약종료일 종가(**) 기준 평가손익 - 의무보유 확약을 하지 아니한 경우 : 배정받은 주식의 공모가격 대비 상장일 종가기준 평가손익

* 사후 수습을 위하여 재매수한 주식의 재매수가격 대비 평가손익 포함

** 위원회 의결일 전 5 영업일까지 의무보유 확약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위원회 의결일 5 영업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3 영업일간의 종가평균을 확약종료일 종가로 적용하여 산정

주 7) 가중・감경 사유가 경합된 때에는 가중 적용 후 감경을 적용(다만, 주 4)의 감면 2)에 따른 감경은 다른 가중·감경보다 우선 적용)하고 감경적용 후 월 단위 미만의 참여제한기간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함

주 8) 동일인에 의한 두 건(종목 수 기준)이상의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행위를 같은 날에 개최되는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경우 참여제한기간이 가장 긴 기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기준으로 가중을 적용하고 해당 사유 발생일은 최근일을 기준으로 함

주 9) 동일인에 의한 두 건(종목 수 기준) 이상의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행위에 대하여 일부 건에 대한 제재를 위원회에서 의결하고, 해당 의결일 이전에 발생한 나머지 건에 대한 제재를 이후에 의결하는 경우 제재의 합은 주 7)의 기준에 따라 산정된 제재와 동일하여야 함

5. 수요예측 대상주식에 관한 사항

1) 대상주식 및 수량 : 에스에프씨㈜ 기명식 보통주

구 분	주식수	배정 비율	비 고
기관투자자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배정수량 포함)	2,750,000 주 ~ 3,750,000 주	55.0% ~ 75.0%	-

주 1) 배정 비율은 전체 공모주식수 5,000,000 주에 대한 비율입니다.

주 2) 우리사주조합 배정분 및 일반청약자 배정분은 수요예측 참여 대상 주식이 아닙니다.

2) 공모희망가액 : 주당 31,600 원 ~ 36,100 원

3) 수요예측 참가 최저한도 및 최고한도

구 분	최고한도	최저한도
기관투자자	각 기관별로 법령등에 의한 투자한도잔액(신청수량 X 신청가격) 또는 **3,750,000 주**(기관배정물량) 중 적은 수량	1,000 주

주 1) 금번 수요예측에 있어서는 물량 배정 시 "참여가격 및 참여자의 질적인 측면(운용규모, 의무보유확약기간, 참여시점, 공모 참여실적, 가격 분석능력, 투자・매매성향, 수요예측에 대한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물량 배정이 이루어지는 바,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는 수요예측 참여자에 대해서는 최대 수요예측 참여수량 전체에 해당하는 물량이 배정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수요예측 참여 시 이러한 사항을 각별히 유의하여 반드시 각 수요예측 참여자가 소화할 수 있는 실수요량범위 내에서 수요예측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최고한도는 수요예측 대상수량 **3,750,000 주**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주 2) 금번 수요예측에는 의무보유기간에 대해 15 일, 1 개월, 3 개월, 6 개월의 의무보유기간을 확약할 수 있습니다.

주 3) 기관투자자 수요예측 최고한도는 기관투자자 배정 물량이 75.0%인 경우를 가정한 주식수입니다.

4) 수요예측 참가 수량단위 및 가격단위

구 분	내 용
수량단위	1,000 주
가격단위	100 원

주 1) 금번 수요예측에 있어서 가격을 제시하지 않고, 수량 혹은 총 참여금액만 제시하는 참여방법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요예측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가격, 수량 및 참여금액을 반드시 제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집합투자회사등이 위탁재산으로 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주식의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매입 희망가격을 제출하지 않아야 합니다.

주 2) 수요예측 참여 수량단위를 고려한 기관투자자 수요예측 참여 최고한도 주식 수는 **3,750,000 주**입니다.

6. 수요예측 참여방법 및 제출서류

[국내 및 해외 기관투자자]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은 국내 및 해외 기관투자자 모두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접수로 진행합니다. 다만, 미래에셋증권㈜의 홈페이지 문제로 인해 인터넷 접수가 불가능할 경우 보완적으로 서면, 유선, Fax, E-mail 등의 방법에 의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서면서류의 제출방법은 인편(직접방문) 및 우편으로 가능하며 우편은 수요예측 마감시각(한국시간 기준 2026 년 11 월 13 일(금) 17:00)까지 도착분에 대하여 접수 가능합니다.

인터넷 접수 및 서면 접수와 관련한 세부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 미래에셋증권㈜의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접수 시에는 반드시 사전에 미래에셋증권㈜의 계좌를 보유하고, 해당 계좌의 계좌번호 및 계좌비밀번호, 사업자등록번호(해외 기관투자자의 경우 외국인 투자등록번호(IRC))로 로그인하셔야 합니다.)

[인터넷 접수방법]

① 홈페이지 **접속: 미래에셋증권 홈페이지(http://securities.miraeasset.com) 접속 → 뱅킹/대출/청약 → 청약 → 수요예측 → 수요예측 참여신청**

② Log in: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외국인 투자등록번호(IRC), 미래에셋증권㈜ 위탁계좌번호 및 동계좌의 비밀번호 입력 (단, 배정받을 시 해당 주식의 입고를 희망하는 계좌번호로 Log in 을 하시기 바랍니다.)

③ 참여기관 기본정보 입력 및 입력내용에 따른 주금납입능력 확약서 인쇄 및 날인/업로드 후 수요예측 참여

④ 법 제 8 조 제 7 항의 금융투자업자 중 '아'목 이외의 자의 경우에는『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 2 조 18 호, 19 호, 20 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에 한하며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⑤ 수요예측 참여자는『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 5 조 제 4 항에 따라 자신의 고유재산과 그 외의 재산(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 신탁재산)을 구분하여 수요예측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집합투자회사의 경우 고유재산, 집합투자재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으로 각각 개별 계좌로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그 외 기관투자자가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고유재산과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으로 각각 개별 계좌로 신청해야 합니다.

⑥ 집합투자회사, 뮤추얼펀드 및 신탁형펀드의 경우, 대표주관회사가 정하는 '펀드명, 펀드설정금액, 계좌번호, 신청가격, 신청수량' 등을 기재한 '수요예측총괄집계표'파일을 수요예측 전산시스템에서 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업로드 하여야 합니다.

⑦ 기관투자자가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으로 참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가 정하는 '펀드명, 계좌번호, 자산총액, 자산구성내역, 신청가격, 신청수량,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 2 조 18 호에, 제 19 호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해당됨을 확인하는 내용'등을 기재한 서류를 수요예측 전산시스템에서 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업로드 하여야 합니다.

⑧ 집합투자회사가 통합신청하는 각 펀드의 경우 수요예측일 현재 약관승인 및 설정이 완료된 경우에 한합니다. 또한, 동일한 집합투자업자의 경우 각 펀드별 수요를 취합하여 1 건으로 통합신청하며, 동일한 가격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해야 합니다. 또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코넥스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포함)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기관투자자는 각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펀드별 참여내역을 기관투자자명의 1 건으로 통합하여 참여하여야 하며, 동일한 가격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해야 합니다. 한편, 해당 펀드의 종목별 편입한도, 만기일 등은 사전에 자체적으로 확인한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⑨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후 물량 배정 시에 당해 집합투자회사에 대해 전체 물량(뮤추얼 펀드, 신탁형 펀드 등에 배정되는 물량을 합산한 물량)을 배정하며, 또한, 기관투자자의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대해서는 1 건으로 통합 배정합니다. 펀드별 물량배정은 각각의 집합투자업자 및 그 외 기관투자자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기준에 의해 자율적으로 배정합니다. 단, 해당 펀드에 배정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관하여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와 발행회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⑩ 집합투자회사(집합투자업 및 집합투자증권), 투자일임회사 및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수요예측 참여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등록업 승인 증빙 서류를 당사 홈페이지상에 업로드 해주시기 바랍니다.

⑪ 집합투자회사등이 위탁재산으로 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주식의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경우 인터넷 접수 시 이와 관련된 항목을 체크하고, 각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87 조 제 1 항 제 2 호의 4, 제 99 조 제 2 항 제 2 호의 4, 제 109 조 제 1 항 제 2 호의 4 에 해당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약서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기 바랍니다.

[수요예측 인터넷 접수 시 유의사항]

ⓐ 수요예측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 및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은 수요예측 참여 이전까지 미래에셋증권㈜에 본인 명의의 위탁계좌가 개설되어 있어야 합니다.

ⓑ 비밀번호 5 회 입력 오류 시에는 소정의 서류를 지참하여 미래에셋증권㈜ 영업점을 방문하여 비밀번호 변경을 하여야 하오니, 수요예측 참여 전 반드시 비밀번호를 확인하신 후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수요예측 참여 내역은 수요예측 마감시간 이전까지 정정 또는 취소가 가능하며, 최종 접수된 참여내역 만을 유효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집합투자회사의 경우 고유재산과 집합투자재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각각 개별계좌로 참여하여야 하며, 집합투자재산의 펀드별 참여내역을 통합하여 참여하여야 합니다. 또한, 그 외 기관투자자가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고유재산과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을 각각 개별 계좌로 신청해야 하되,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의 참여내역을 각각 통합하여 참여하여야 합니다(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통합분 구분).

한편,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후 물량배정 시에 당해 집합투자업자에 대해 전체 물량 (뮤추얼 펀드, 신탁형 펀드 등에 배정되는 물량을 합산한 물량)을 배정하며, 또한, 기관투자자의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대해서 1 건으로 통합 배정합니다. 펀드별 물량 배정은 각각의 집합투자업자 및 그 외 기관투자자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기준에 의해 자율적으로 배정합니다. 단, 해당 펀드에 배정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관하여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와 발행회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 집합투자회사, 뮤추얼펀드 및 신탁형펀드의 경우, 대표주관회사가 정하는 '펀드 명, 펀드설정금액, 계좌번호, 신청가격, 신청수량' 등을 기재한 '수요예측총괄집계표' 파일을 수요예측 전산시스템에서 다운로드후 작성하여 업로드하여야 합니다. 또한, 기관투자자가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으로 참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가 정하는 '펀드명, 계좌번호, 자산총액, 자산구성내역, 신청가격, 신청수량, 증권 인수업무등에 관한 규정 제 2 조 18 호, 19 호, 20 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해당됨을 확인하는 내용'등을 기재한 서류를 수요예측 전산시스템에서 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업로드 하여야 합니다.

주) 관련 정보 입력 후 최종적으로 "확인"버튼을 눌러야 수요예측 신청이 마감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면 접수방법(온라인 접수가 불가할 경우)]

구 분		내 용
공 통 서 류		- 수요예측참여신청서(대표이사 명의의 사용인감 혹은 법인인감 날인) - 대리인 신분증 사본 **- 주금납입능력에 관한 확약서**
추 가 서 류	집합투자회사 (집합투자재산)	**- 집합투자업 또는 집합투자증권 인가등록업 승인 증빙 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 펀드명, 펀드설정금액, 신청가격, 신청수량 등을 기재한 "수요예측참여총괄집계표" (소정양식) - 피투자펀드 IPO 수요예측 미참여 소명서 및 증빙서류 (소정양식, 해당 시) - 수탁회사의 펀드설정확인서 및 수탁회사에 대한 투자신탁금 입금증 사본
	투자일임회사 (투자일임재산)	**- 투자일임회사 인가등록업 승인 증빙 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 투자일임회사용 수요예측참여 총괄집계표(소정양식) - 투자일임회사 확약서 - 피투자펀드 IPO 수요예측 미참여 소명서 및 증빙서류 (소정양식, 해당 시) ※ 투자일임재산으로 참여하는 투자일임회사에 한하여 상기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일반기관투자자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 상호저축은행은 자기자본이 표시된 서류를 추가제출
	고위험고수익 투자신탁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과 관련된 인가등록업(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특정금전신탁 관련) 승인 증빙 서류(조세특례제한법 제 91 조의 15 제 1 항)**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용 수요예측 참여 총괄집계표(소정양식) - 피투자펀드 IPO 수요예측 미참여 소명서 및 증빙서류 (소정양식, 해당 시)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확약서

※ 해외 기관투자자의 경우

- 수요예측 참가신청서(대표이사 명의의 사용인감 혹은 법인인감 날인)
- 대표주관회사가 정하는 소정의 양식이나 정보
-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 3-12 조 제 1 항 1 호 내지 2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외국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대리인 신분증 사본

※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해외 기관투자자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 2 조 제 8 호 '바'목에 해당하는 투자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 받은 해외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으로 참여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 2 조제 8 호 사목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임을 확약하는 확약서를 징구하며, 동 서류와 관련하여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수요예측 유의사항

1) 수요예측 접수는 미래에셋증권㈜ 홈페이지(http://securities.miraeasset.com)를 통한 인터넷 접수로 진행합니다. 다만, 미래에셋증권㈜의 홈페이지 문제로 인해 인터넷 접수가 불가능할 경우 보완적으로 유선, Fax, E-mail 등의 방법에 의해 접수 받을 수 있습니다. 수요예측 마감시간 이후의 접수분은 무효처리 되며 우편접수로 인한 문제 발생(도착의 지연, 누락 등)의 책임은 제출자에게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수요예측에 오프라인으로 접수하고자 하는 참여자는 반드시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가 배포한 소정의 신청서에 필요사항을 기재한 후 기명날인하여야 하며, 날인이 없을 때에는 무효로 처리합니다. 또한 미래에셋증권㈜를 통하여 참여하는 기관투자자(인터넷 접수 및 오프라인 접수 대상자 모두)는 수요예측참가신청서에 본인 명의로 개설된 미래에셋증권㈜ 위탁계좌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 만약 동 계좌가 없을 경우 수요예측 참여 전에 계좌를 개설하여야 합니다.

3)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에 참여한 전문투자자의 접수내역을 실시간 모니터링하며, 수요예측 참여기간 중에 기관투자자의 수요예측 진행상황과 관련한 내용을 홈페이지 또는 보도자료 등을 통해 공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증권 인수업무에 관한 규정」제 5 조 제 6 항에 의거하여 신청가격 및 신청수량 등과 관련한 수요예측 참여정보는 공지하지 않습니다.

4) 자산운용회사(뮤추얼펀드 및 신탁형펀드)의 경우 수요예측일 현재 약관승인 및 설정이 완료된 경우에 한하며, 해당펀드의 소속금융기관 명의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동일한 자산운용회사의 경우 각 펀드별 수요를 취합하여 1 건으로 통합신청하며, 동일한 가격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해야 합니다. 한편, 해당펀드의 종목별 편입한도, 만기일 등은 사전에 자체적으로 확인한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수요예측 참가자는 수요예측신청서 상에 본인명의 당사 위탁계좌를 기재하여야 하며, 동 계좌가 없을 경우에는 수요예측 참여 전에 계좌를 개설하여야 합니다.

6) 참가신청수량이 각 수요예측 참여자별 최고 한도를 초과할 때에는 최고 한도로 제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7) 신탁형펀드로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 가능하며, 뮤추얼펀드 및 신탁형펀드가 동일한 가격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할 경우, 당해 자산운용회사 명의의 1 개의 수요예측 참가신청서로 통합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8) 오프라인으로 제출하는 수요예측신청서에는 신청가격과 신청수량을 문자와 숫자로 각각 기재하여야 하며 문자와 숫자가 상이할 때에는 문자로 제시한 것을 유효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9) 수요예측 참여 시 각각의 해당되는 제출서류 등을 제출하지 않거나, 상기의 제출서류를 미비 또는 누락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한 경우, 참여 자체를 무효로 합니다.

10) 수요예측에 참가 시 기재한 내용 또는 제출한 서류에 허위의 내용이 있거나, 확약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불성실수요예측 참여행위)에도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로 관리합니다. 특히 집합투자기구가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 집합투자회사는 물론 동 기관이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도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로 관리될 수 있습니다.

11) 수요예측 참여 시 참가신청서를 허위로 작성, 또는 제출된 참가신청서를 임의 변경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하는 자는 참여자체를 무효로 합니다.

12) 수요예측에 참가하지 않았거나, 수요예측에 참여하였으나 배정받지 못한 경우에도 공모가액으로 배정을 받기를 희망하는 기관투자자 등은 청약일에 추가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요예측에서 배정된 수량이 모두 청약된 경우에는 배정받을 수 없습니다.

13) 상기 배정의 결과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여 배정이 원활하지 못할 경우 대표주관회사가 판단하여 배정에 대한 기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14) 의무보유확약기간 중 매도, 대여 뿐 아니라 담보제공, 선물대용 지정, 공매도 등도 제재대상에 해당됨을 사전에 인지해주시기 바랍니다.

15) 기타 유의사항은 증권신고서 內 기재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 공모가액 결정방법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 및 공동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는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발행회사인 에스에프씨㈜와 협의하여 최종 공모가액을 결정합니다.

구 분	내 용
수요예측 결과 반영 여부	수요예측 참여기관의 참여가격 및 신청수량, 참여기관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참고자료로 활용
공모가격 결정 협의 절차	대표주관회사 및 공동주관회사는 발행회사에 수요예측 결과를 제시하고, 대표주관회사와 공동주관회사 및 발행회사가 공모가격에 대해 협의함
공모가격 최종결정	발행회사의 대표이사, 재무담당 임원과 대표주관회사 및 공동주관회사의 담당 사업부문 대표 등이 협의하여 최종 결정함

주 1)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 및 공동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와 발행회사인 에스에프씨㈜는 수요예측 참여자의 성향 및 가격평가능력 등을 감안하여 공모가격 결정 시 가중치를 달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과도하게 높거나 낮은 참여가격은 공모가격 결정 시 배제하거나 낮은 가중치를 부여할 수 있으며, 가격을 제시하지 않은 수요예측 참여자는 공모가격 결정 시 제외됩니다.

9. 수량배정방법 및 수요예측 결과 통보

1) 상기와 같은 방법에 의해 결정된 확정공모가액 이상의 가격을 제시한 수요예측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참여가격, 참여시점 및 참여자의 질적인 측면(운용규모, 의무보유확약기간, 투자성향, 공모 참여실적 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대표주관회사가 자율적으로 배정 물량을 결정합니다.

2)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는 최종 결정된 확정공모가액을 미래에셋증권㈜ 홈페이지(http://securities.miraeasset.com)에 게시하며, 기관별 배정물량은 수요예측 참여기관이 개별적으로 미래에셋증권㈜ 「http://securities.miraeasset.com ⇒ 온라인지점/뱅킹 ⇒ 청약 ⇒ 수요예측 ⇒ 배정결과 조회」에 접속한 후 배정물량을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개별 통보에 갈음합니다.

3) 수요예측 참여에 의해 배정된 물량을 미청약한 경우에는 불성실수요예측 참여자로 금융투자협회 회원 홈페이지(http://work.kofia.or.kr/) 에 게시 등록됩니다.

10. 청약 및 납입 관련 유의사항

1) 청약기간 : 2026 년 11 월 18 일(수) ~ 11 월 19 일(목)
2) 납입일 : 2026 년 11 월 23 일(월)

- 수요예측에 참가하여 배정받은 주식에 대한 청약은 청약일인 2026 년 11 월 18 일(수) ~ 11 월 19 일(목) 08:00 ~ 16:00(한국시간 기준)에 미래에셋증권㈜가 정하는 소정의 주식청약서(청약증거금율 0%)를 작성하여 미래에셋증권㈜의 본・지점에서 청약하여야 하며, 동 청약 주식에 해당하는 주금을 납입일인 2026 년 11 월 23 일(월) 08:00 ~ 13:00 (한국시간 기준) 사이에 미래에셋증권㈜의 본・지점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 **기관투자자 청약의 경우 청약금액의 1%에 해당하는 청약수수료를 납입일에 입금해야 합니다. (국내/해외 기관투자자 공통사항)**

- 청약일(2026 년 11 월 18 일(수)과 11 월 19 일(목))에 청약한 주식에 대해 **납입일(2026 년 11 월 23 일(월)) 13 시까지 납입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청약에 대한 납입을 불이행한 것으로 간주되며, 사후적으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 등 법적인 책임을 질 수 있음을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